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독자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지표 연구\*

장은하\*\*·문유경\*\*\*·조혜승\*\*\*\*·김정수\*\*\*\*\*·김지현\*\*\*\*\*

## 초 록

2015년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 할 새로운 국제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244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 MDGs에서와 마찬가지로, SDGs에서는 성평등을 위한 독자 목표(Goal 5)로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가 채택되었다. 독자 목표인 5번의 경우 MDGs와는 달리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항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성평등 달성에 있어서 전환적(transformative)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본고는 SDGs의 국내이행의 착수를 앞두고, SDGs 성평등 목표의 이행 점검을 위한 국내 가용통계를 점검하고, 향후 SDGs 성평등 목표의 국내이행 점검을 위한 기초 매핑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이행을 위한 지표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으로 SDGs 내 지표 수립과정을 소개하고 특히 성평등 목표의 범위와 지표 수립 과정을 보다 자세히 서술한다. 이어서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소개하고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개괄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SDGs 글로벌 지표의 정의의 완성도와 현재 국내 통계의 가용상태를 고려하여 4가지의 범주로 구성된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SDGs의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정의가 불확실한 지표에 대해 조작적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가용통계가 부재하거나 미흡한 지표의 경우 이에 대한 추가개발의 필요함이 드러났다. 결론에서는 분석내용을 토대로 국내 SDGs 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성평등, 여성

\*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의 일부로서 학술적 기여와 확산을 위해 수정, 보완되었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ehchang@kwi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mizmoon@kwidimail.re.kr)  
\*\*\*\* 교신저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hyeseung05@kwidimail.re.kr)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위원(ciel5817@kwidimail.re.kr)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연구위원 김지현(jihyunkim@kotra.or.kr)

## I. 서론

2015년 국제사회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개발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17개 목표(goals)와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 그리고 244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한다.<sup>1)</sup> MDGs에서와 마찬가지로, SDGs에서는 성평등을 위한 독자목표(Goal 5)로 “양성평등 및 여성과 여아의 권한강화”가 채택되었다. 또한 그 외의 10개의 목표에서 젠더 관련 이슈들이 크로스커팅(cross-cutting) 되었다. 특히 독자 목표인 5번의 경우 MDGs와는 달리, 성평등 달성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촉구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었다.

SDGs가 이전의 MDGs와 차별되는 점 중의 하나는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에도 목표의 달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은 SDGs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 역시 SDG 목표의 국내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지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SDG 5번 성평등 목표-세부목표-지표는 지난 수세기 동안의 국제여성인권 운동의 산물이며, 여기에서 사용된 단어 하나에도 성인지적인 관점이 녹아 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국내적으로도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필두로 국내 현황 파악 및 향후 이행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2018년부터 환경부의 주도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라는 명칭 하에 SDGs 목표의 국내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목표 별 작업반이 구성되었으며, 2018년 말까지 K-SDGs가 수립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전문가들은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법 개정과 대통령 직속이나 총리실 산하의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총괄 기구의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으나 무산되었으며, 현재 환경부 주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K-SDGs 수립을 진행 중에 있다.

SDGs 관련 연구들은 원조기관, 정책연구원, 학계,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Post-2015 담론 속에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는 SDGs 글로벌 이행 및

1) 이는 2017년 12월 시점까지 확정된 지표의 개수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지표설정을 위한 논의는 진행 중에 있으며, 지표의 개선과 수정, Tier의 재분류와 더불어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지표를 추적하는 연구, 국내이행 체계 연구, 국내이행을 위한 통계·데이터 측면의 연구, 국내이행을 위한 섹터 별 연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SDGs 지표관련 국내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초 연구로서 큰 의미가 있으나, 지표와 통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연구는 많지 않으며, 특히 젠더관점이 결여되어 성평등 지표의 정확한 해석과 현황파악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VNR)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의 경우, 성평등 이슈와 관련하여 한국의 정책 목표와 성과, 성평등 간 연결성이 부족하며, SDGs 내 주요 젠더이슈인 폭력, 여성혐오살인(femicide)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문제의식과 개선 노력 부족함을 지적하며, 젠더와 연관된 10개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평가 및 한국적 맥락에서의 이행과제 보완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6). 따라서 SDGs의 성평등 관련 목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계획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강상인, 2015)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할 때, SDGs 성평등 관련 지표에 대한 기초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이행을 선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는 SDGs 성평등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지표 연구를 시도한다. 성평등 글로벌 목표 5번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해석을 제시하고, 이행 점검을 위한 국내 가용 자료와 통계의 산출가능성을 점검하여, 향후 국내 성평등 목표의 지표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SDGs 내 지표 수립과정을 개괄하고 특히 성평등 독자 목표의 범위와 지표 수립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였으며, SDGs 국내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와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SDG 5 지표의 현황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지표 정의의 완성도와 현재 국내 통계의 가용상태를 고려하여 4가지의 범주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틀의 한 축은 지표 정의의 완성도에 따라, 지표의 개념이 확실하고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 지표와 그렇지 않은 지표로 구분하였으며, 다른 한 축은 통계(자료)의 산출여부에 따라 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어 지표에 적합한 통계를 제시할 수 있는 범주와 통계가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 분석틀을 활용하여 SDGs 5 지표의 범주화를 시도하여 향후 SDG 5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SDGs는 이전의 국제사회의 개발목표인 MDGs에 비해 성평등 측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MDGs에서의 성평등 이슈는 목표 3번의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 강화”라는 독립목표로 설정되어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평등이 세부목표로 수립되었으며, 그 외에도 목표 1번(기아), 2번(교육), 4번(아동사망률), 5번(모성사망률)에도 성평등 이슈가 크로스커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MDGs에 대해 모성보건, 성평등을 다루면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 및 무보수 노동 등 여성 인권 관련 이슈와 구조적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비판도 존재하였다(Barton, 2005). 또한, 김은경 외(2014)에서는 MDGs 분야별로 다루어지지 않은 젠더 의제들을 구분하면서 여성의 물과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의료접근성, 의사결정 권한 등 관련 목표 내에서 젠더가 다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MDGs의 이러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Post-2015 논의에서는 향후 수립될 새로운 개발목표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달성을 위한 구조적 방해물을 해결하는 전환적(transformative)인 접근으로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였다(UN Women, 2013). 여기서 ‘전환적’이라 함은, 기존의 젠더 관계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젠더 관계를 지지하는 구조가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UN Women, 2013). 아울러 새로 수립되는 개발목표는 양성평등과 여성인권, 여성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MDGs와 비교했을 때 인권적인 고려가 포함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UN Women, 2013).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79), 인구와 개발에 관한 세계회의(ICPD, 1994), 제4차 세계여성대회(1995)와 여기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리우 20 회의(1994), MDGs 그리고 CSW의 주제 분야 등 기존 국제사회의 노력(commitment)에 기반을 둘 것이 요청되었다(UN Women, 2013).

구체적으로 1979년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의하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배제 또는 제한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을 촉구한다. 즉, 이 협약은 공적, 사적영역(정치, 교육, 보건, 고용 등의 각 분야)에서 여성의 평등한 접근과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SDGs의 세부목표들은 여성차별철폐

협약의 이러한 가치에 근거하고 있으며, 특히 세부목표 5.1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한다. 또한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에서는 카이로 행동계획(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을 통해 재생산 건강(reproductive health)이 효과적인 인구개발 전략에 필수적임을 논의하며,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Amnesty International, 2012). 1995년 제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합의된 국제적 의제인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의 역량강화와 남녀의 평등한 권력관계를 추구하고자 여성과 빈곤 등의 12개의 주요 관심부문을 설정한 바 있다(이선주 외, 2010). 이와 같이 SDGs는 그동안의 여성인권 관련 국제협약과 논의에 의거한 산물이며, SDGs 내 성평등 세부목표들을 아우르는 원칙과 철학을 제시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SDGs 성평등 목표 중에서 본 논문의 초점인 독자 목표 5번의 내용과 글로벌 지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SDG 5번 성평등 목표

SDGs에서는 세부목표와 지표 수립 시 구조적인 문제들의 변화를 위한 목표들이 대거 진입되었다.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SDGs 성평등 독자 목표 5번은 총 9개 세부목표와 이에 따른 14개의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앞서 설명된 것처럼, 여성차별철폐협약, 카이로 행동계획, 북경행동강령 등 그동안 여성인권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반하여, 구조적인 차별철폐와 권리적 접근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의 MDGs에서의 성평등 독자 목표의 내용이 교육에서의 성별격차 해소에 한정되었던 반면, SDG 5번 목표에서는 여성성기절제 등 여성에 대한 유해한 관습(세부목표 5.3), 성평등을 위한 제도(세부목표 5.a, 5.c), 여성의 정치참여와 역량강화(세부목표 5.5), 재생산 건강과 자기결정권(세부목표 5.6), 경제 및 사회적 권리 등이 포함되어 모든 세부목표에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인 차별철폐와 권리적 접근이 도입되었다. 또한 성평등에 대한 내용이 크로스 커팅 이슈로서 다른 10개 목표에 포함됨으로써, SDGs의 보다 넓은 분야에서 성 주류화를 실현하였고 이는 보다 통합적인 양성평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1〉 SDG 5 성평등 세부목표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최종 확정 지표	Tier 구분
5.1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5.1.1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여아 중 현재 또는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여아 중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Tier II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의 근절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5.3.2 15~49세 여아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Tier II
5.4	국가별로 적절한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적 보호의 제공과 가구·가족 내 책임분담의 증진을 통한 무보수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 및 가치부여	5.4.1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Tier II
5.5	정치·경제·공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5.5.2 여성 관리직 비율	5.5.1 (다중/미정) 5.5.2 (Tier 1)
5.6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보건과 재생산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5.6.1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관계, 피임 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6.2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	5.6.1 (Tier II) 5.6.2 (Tier III)

목표 5	양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	최종 확정 지표	Tier 구분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5.a.1 (a)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 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 (B) 총 토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 (토지권 종류별) 5.a.2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수	Tier II
5.b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증진을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진	5.b.1 성별 휴대폰 보유율	Tier I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soli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강화	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및 추적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Tier II

출처 : 김지현(2015), IAEГ-SDGs(2017b)의 내용을 기반으로 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진이 수정함

## 2. SDG 5번 성평등 목표 내 글로벌 지표 현황

본 절에서는 앞서 설명한 SDG 5번 성평등 세부목표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서 고안된 SDG 5번 내의 지표들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UN차원에서의 글로벌 SDGs 지표의 수립은 2015년 3월 구성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기관 간 전문가그룹(IAEG-SDGs) 회의와 유엔통계위원회(UNSC) 총회가 주축이 되어 이루어져 왔다. IAEG-SDGs은 지표를 녹색, 황색, 회색으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시작하여, 지표의 개발상황에 따라 3개 Tier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의 공개자문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지표를 수정해오고 있다.

2017년 11월 6차 회의 이후 확정된 232개 지표는 실제 세부목표별로 제시된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총 244개였다. 이렇게 확정된 232개의 지표는 크게 3개의 Tier로 분류되어 있다. <표 2>는 지표의 Tier 체계 구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Tier I은 개념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된 방법론과 기준이 있으며, 데이터가 모든 지역에 있어 50% 이상의 국가 및 인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지표를 가리킨다. Tier II는 개념이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수립된 방법론과 기준은 있으나, 데이터가 정기적으로 수집되지 않는 지표를,

Tier III는 국제적으로 정립된 방법론이나 기준이 아직 없으나,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될 예정, 또는 지표가 테스트되고 있거나 될 예정인 지표를 의미한다.

전반적인 글로벌 SDGs 지표 현황과 비교해, SDG 5번 지표의 상황을 살펴보면, 5번 목표 내 15개 지표 중에서, Tier I으로 구분되는 것이 3개(약 20%), Tier II로 구분되는 지표가 10개(약 67%), Tier III(약 13%)로 구분되는 지표가 2개로, 개념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론과 기준 하에 50% 이상에서 데이터가 구축된 Tier I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정기적 데이터의 수집이 요청되는 Tier II의 지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고)

〈표 2〉 성평등 독자목표 SDG 5 상 지표의 국제적 Tier 체계 구분

Tier 구분	해당 지표	해당 지표 수 (비율)
Tier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5.1. (a) 의회의 여성의식 비율</li> <li>• 5.5.2. 여성 관리직 비율</li> <li>• 5.b.1. 성별 휴대폰 보유율</li> </ul>	3 (20%)
Tier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여아 중 현재 또는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li> <li>•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여아 중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li> <li>•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혹은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li> <li>• 5.3.2. 15~49세 여아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li> <li>• 5.4.1.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li> <li>• 5.5.1. (b) 지방정부의 여성의식 비율</li> <li>• 5.6.1.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 여성 비율</li> <li>• 5.a.1. (a)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b) 총 토지 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li> <li>• 5.a.2.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수</li> <li>• 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및 추적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li> </ul>	10 (67%)

Tier 구분	해당 지표	해당 지표 수 (비율)
Tier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1.1.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li> <li>• 5.6.2.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li> </ul>	2 (13%)
계		15

주 : 5.5.1. 지표의 경우, 하나의 지표이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두 가지 내용이 각각 Tier I 과 TierII에 나누어 들어가 있어 2개 지표로 계산하여 총계를 냄.

출처 : IAEГ-SDGs (2017b)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구성함.

### 3. SDGs 국내이행 현황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SDGs는 이전의 MDGs와는 달리 선진국에도 그 이행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지표의 국내적 내재화를 위한 작업과 이를 위한 국내적 지표현황의 점검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본 소절에서는 SDG 성평등 독자 목표 5번에 대한 상기의 국제적 논의 속에서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해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책적 국내이행 기반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국내이행 기반

SDGs의 이행을 위해서는 각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참여와 체계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국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내 노력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부터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1990년대에 이르러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등의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1992년에 진행된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으로서 ‘의제 21(Agenda 21)’이 도출되는 것 등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이 마련되었다(오수길 외, 2016). ‘지방의제 21’은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수립한 의제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 환경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으로 고안되었다.<sup>2)</sup>

2) 지속가능발전포털. 지방의제. <http://ncsd.go.kr/app/sub03/24.do> (접속일 : 2017. 11. 22)

200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국가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었다. 2000년 6월 정부는 「새천년 국가환경비전」을 선언하고, 이 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로 9월에는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되었다.<sup>3)</sup> 이어 2006년에는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2006-2010)」이 발표되고, 2007년에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며 2008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오수길 외, 2016). 이후 2010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하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기존에 대통령 소속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다(오수길 외, 2016).

이러한 제도적 체계를 토대로 2011년에는 제1차 기본계획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추구한 「제2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15)」이 수립되었다(조을생 외, 2014). 2차 기본계획은 ‘기후변화대응 및 적응, 산업경제, 사회·건강, 국토·환경분야’의 4대 전략과 25개 이행과제를 포함한다(오수길 외, 2016). 2016년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채택하여 SDGs를 국내 여건에 맞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환경-사회-경제 각 부문 간 통합성 제고정책’을 강화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6).

이상의 SDGs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적, 제도적 토대를 종합해 보면, 1990년대부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06-2010)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수립되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초기 대통령 소속이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10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가운데, Post-MDGs 체계가 반영되어 있는 새로운 SDGs 이행을 위한 기구로서 자리매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즉, SDGs 국내이행을 위해서는 SDGs의 방대한 주제와 부처 간 협치를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나, 환경부 산하의 개별 위원회로서는 SDGs의 다양한 의제를 소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오수길 외, 2016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 2016 ; 통계개발원·서울대

3) 지속가능발전포털. 국내적 배경. <http://ncsd.go.kr/app/sub02/92.do> (접속일: 2017. 11. 22)

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sup>4)</sup>. 따라서 국내 SDGs를 총괄하는 부처가 환경부에 소속되어 있어, SDGs가 환경의 이슈로 강조되어 SDGs 내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지적을 극복하고자 환경부는 2018년 4월 SDGs의 각 목표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고자 작업반을 구성한 바 있으며, SDGs 목표별 국내 현안 및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국내 지표를 수립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8).

## 2) 국내 SDGs 이행을 위한 선행연구

국내에서는 SDGs가 최종 수립되기 이전인 Post-2015 논의 때부터 다양한 관점에서 관련 연구들이 생산되었다. 글로벌 SDGs 담론을 추적하는 연구는 주로 국가 원조기관인 KOICA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정책제언 및 이행 방안을 위한 연구는 학계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에서는 환경, 보건, 젠더 등의 관련기관에서 해당 섹터별 연구물을 발간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분류하여 보면, 글로벌 이행 및 지표 추적 연구, 국내이행 체계 및 거버넌스 연구, 국내이행을 위한 통계·데이터 측면의 연구, 국내이행을 위한 각 섹터 별 연구 등으로 분류가능한데, 본고에서는 특히 SDGs 지표 관련 선행 연구와 성평등 목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글로벌 차원에서의 SDGs 지표 수립에 관한 연구는 향후 SDGs의 국내이행을 위해서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김지현(2016)의 연구에서는 SDGs 지표의 확정 시점을 맞이하여 지표의 수립 과정과 관련 기구를 소개하고, 지표의 구성과 내용, 특히 수립 과정에서의 내용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김수진(2016)은 2016년 3월 공개된 IAEG-SDGs 보고서에서 제시된 Tier I 지표들을 대상으로 실제 제시된 데이터에 얼마나 접근 가능한지(data accessibility), 그리고 193개 UN 회원국 전체 중 얼마나 많은 국가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지(country coverage), 그리고 해당 국가들의 데이터 이용가능 연수는 얼마나 충분한지(data frequency) 등 지표의 Tier에 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

4) 2016년 제출된 한국 VNR의 내용은 ODA를 위시한 국제이행 지원체제는 모양을 갖추어 가는 반면, 국내 추진체제는 새로이 수립된 내용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SDGs에서는 통계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수립된 지표와 부합하는 가용통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2016a, 2016b)는 SDGs 모든 세부 목표 하 지표 측정을 위한 국내가용 통계를 제시하는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이행을 위한 토대도 마련한 매우 중요한 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2016b). 또한 박영실 외(2017)의 연구에서도 SDGs 체제 하의 증거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통계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SDGs 지표 개발 과정을 설명하고 국가차원의 목표-세부목표-지표체계 작성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SDGs 성평등 목표와 관련한 소수의 연구가 존재한다. 김은경 외(2014)는 Post-2015 의제에서의 젠더 이슈를 고찰하였다. UN Women이 제시한 3가지 틀로 의제를 분석하고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을 중심으로 진행된 논의의 추이를 추적하였다. 특히 북경행동강령부터 이어진 여성주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Post-2015 관련 젠더 이슈를 해석하고자 하였으며, SDGs와 성평등 목표와 관련된 매우 드문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김양희(2014)는 MDGs 목표와 세부목표의 한계를 분석하고 Post-MDGs 내 젠더 이슈 논의 동향을 제공하였으며, 정금나(2015)의 경우 글로벌 목표 5번 설정 배경과 분석을 제공 후 한국의 대응 전략 및 기여 방안을 제시하였다.

SDGs 국내이행을 위한 지표 연구와 글로벌 성평등 목표 관련 연구가 미약하나마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지표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2016a, 2016b)에서 수행한 연구의 경우, 기초적인 가용 통계는 확인하였으나, 성평등 목표 5번을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채 해석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용 통계의 제시도 제한적이다. 또한 성평등 목표 연구의 경우 글로벌 성평등 목표 5번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국내이행이나 지표에 관한 부분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본고는 성평등 목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국내 가용 통계를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이행 지표를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을 두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검토를 주로 활용하였다. 우선, SDGs의 성평등 독자 목표 내 세부목표의 대한 정의의 분석을 위해 UN Women을 포함한 주요 국제기구의 문헌과 함께, SDGs 성평등 목표 논의 과정에서 강조된 바 있는 CEDAW, ICPD 등 여성인권 관련 주요 국제협약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성평등 독자 목표의 세부목표가 갖는 의미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표에 대한 분석을 위해 UN 통계국에서 2016년 발간한 지표해설서(UNSD, 2016)를 주로 참고하였다. 한편, 국내 가용통계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로서 기존에 구축되어있는 SDGs 전체 지표에 대한 국내 가용통계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2016a,b)의 연구를 일차적으로 참고하되,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통계청·여성가족부, 2017)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야별 성별 분리 통계를 통해 보완하였다. 또한, 일부 지표의 경우,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상에서 지표의 내용을 키워드로 넣어 검색하여 국내 가용통계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SDGs 성평등 목표의 국내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지표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2. 분석의 틀

본 연구는 SDGs 내 5번 성평등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현황 점검 및 향후 과제 도출을 위해 지표에 대한 확실한 정의의 유무와 국내 통계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틀을 활용하여 성평등 목표의 지표들을 검토하였다. 즉, 정의의 확실성은 해당 목표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구분하여, 추가적인 개념적 논의가 불필요할 경우 '정의 확실'로 분류하고 추가적인 개념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 '정의 불확실'로 분류하였다. 통계유무는 국내 가용통계 혹은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자료 있음'으로, 국내 가용통계가 부재하여 추가적인 자료구축이나 성별분리가 요구될 경우 '자료 미흡'으로 분류하였다.

〈표 3〉 지표의 산출에 필요한 통계의 구분

통계유무 \ 정의확실성	지표의 정의가 확실	정의가 불확실
통계있음	I	III
통계없음	II	IV

출처: 연구진 작성

상기의 표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선, 그룹 I에 속하는 지표는 그 정의가 확실하고, 국내에 성별로 분리된 가용통계도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룹 II에 속하는 지표는 조작적으로 확실히 정의는 되어있으나, 국내의 가용 통계가 부재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생산되는 경우이다. 그룹 III에 속하는 지표들은 그 정의가 국제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나 논의 중에 있으나, 해당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국내 통계는 존재하는 경우이다. 그룹 IV에 속한 지표들은 지표의 정의가 확실하지 못하고, 국내 가용통계도 생산되고 있지 못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에 맞추어 성 평등 지표의 국내 가용통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내 SDGs 이행을 위한 정책과제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 IV. 분석

SDGs 내 성평등 독자 목표 5번의 14개의 지표를 정의의 확실성과 자료의 유무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표 4〉와 같이 정리되었다. 정의가 확실하고 국내 이행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지표로 구성된 〈그룹 I〉과 정의가 확실하나 국내 이행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표로 구성된 〈그룹 II〉의 경우 각각 5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정의가 불확실하나 국내 이행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지표로 구성된 〈그룹 III〉의 경우 1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정의가 불확실하고 국내이행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표로 구성된 〈그룹 IV〉에는 3개의 지표가 분류되었다. 즉, 총 14개의 지표 중 대부분의 지표인 10개는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나, 4개의 지표는 국내 이행을 점검하기에 앞서 해당 지표 정의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구축 측면에서 살펴보면, 총 14개의 지표 중 6개 지표의 경우 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었으나, 나머

지 8개의 지표의 경우에는 자료가 부분적으로 구축되어 있거나 부재하여 이에 대한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그룹에 대한 자세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성평등 목표의 지표 분석결과

정의 확실성 자료 유무	정의 확실	정의 불확실
자료 있음	〈그룹 I〉 5.1.1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5.4.1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5.6.2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 5.a.2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수 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및 추적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그룹 III〉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자료 미흡	〈그룹 II〉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5.3.2 15-49세 여아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5.6.1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 5.a.1 (a)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 : (B) 총 토지 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5.b.1 성별 휴대폰 보유율	〈그룹 IV〉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여아 중 현재 또는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여아 중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5.5.2 여성 관리직 비율

출처 : 연구진 작성

## 1. 그룹 I : 국내이행을 위한 정의가 확실하고 국내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지표

분석틀에 따라 본 결과 <그룹 I>에는 5.1.1, 5.4.1, 5.6.2, 5.a.2, 5.c.1의 총 5개의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 지표들은 정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국내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통계나 자료도 비교적 잘 구축되어있는 지표로서 향후 국내이행을 위해서 정기적인 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요구된다.

먼저 지표 5.1.1은 ‘모든 곳에서의 모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이라는 세부목표 5.1을 측정하기 위하여, 1)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여성과 여아에 대한 비차별(non-discrimination)을 증진할 국내법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2)해당 법의 실행을 ‘강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존재 여부를 측정한다(UNSD, 2016).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양성평등 관련 법 존재의 여부(유무)를 설정한 이유는, 차별적인 법을 제거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여성과 여아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UNSD, 2016). 지표 5.1.1의 경우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롯한 그동안의 여성인권 관련 국제협약과 논의에 의거하여 정의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지표 5.1.1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법적 체계가 잘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법적 근거에 따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등을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부처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모든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제11조 제①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양성평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소관 법률 중 양성평등과 비차별에 관련된 법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2001.5.24. 제정) 역시 성차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해당 분야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표 5.1.1의 경우 명확한 정의와 함께 국내이행점검을 위한 자료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다.

지표 5.4.1은 ‘무보수 가사노동(unpaid domestic work) 및 돌봄노동(care)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을 측정한다.<sup>5)</sup> 유엔 통

5) 기존 선행연구에 의하면 해당 지표의 ‘unpaid work’에 대한 번역이 무상돌봄으로 번역

계국(UNSD, 2016)이 제시하는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정의는 자가 최종소비를 위한 무보수 생산활동(unpaid production for own final consumption)으로써, 자가소비(self-consumption)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무보수 노동과, 공동체와 환경, 가족 및 가까운 친인척 외의 타인을 위해 무보수로 수행되는 봉사활동을 포함한다. 동 지표의 계산 방식은 개인의 전체 시간 중에서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율(%)로 계산되며, 성별, 연령, 지역(도시/지방)에 따라 분리된 통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5.4.1지표에 해당하는 국내에 가용통계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여성가족패널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에 의해 5년 주기로 생산되는 <가족실태조사>, <양성평등 실태조사> 등에서, 성역할 태도, 자녀돌봄 부담정도, 가사노동 수행비율, 부부 간 가사노동 부담 비율 등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 해당 통계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농가/비농가)에 따른 행동별 평균시간을 측정하고 있어 해당 지표를 위한 국내이행점검이 용이하다.

5.6.2는 ‘국제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과 북경행동강령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재생산 보건과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의 세부목표 5.6을 위하여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를 측정한다.<sup>6)</sup> 이 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관계 및 재생산과 관련된 보건, 정보, 교육을 법률 및 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이다. 이는 성관계 및 재생산을 포함한 여성의 보건 문제가 개인적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됨을 의미한다(이선주 외, 2010).

---

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무보수 돌봄으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이는 paid work는 임금노동이라고 해석되는데 반해 unpaid care가 무상 돌봄으로 해석되는 것은 무상으로 제공되는 돌봄의 의미를 띠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paid work의 반대개념으로 적절한 보수가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무보수 돌봄’으로 번역하였다.

6) 이 연구에서는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을 성·생식보건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성·재생산 건강’으로 번역함으로써, 이전의 임신과 출산에 한정된 모자보건과는 다른 의미로 여성의 생애 주기적 전반에 걸친 인권의 개념(rights-based approach)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생리, 피임, 임신, 출산, 낙태, 출산 이후 건강관리, 갱년기 등 여성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포괄하는 건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표 5.6.2에 대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헌법,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등에 관련 법률과 규정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고경환 외, 2016). 예를 들어 헌법 제 36조 제 2항은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며, 제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을 통해서도 국가는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개입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 ‘청소년의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과 학교보건법을 통해 보장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우 여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위해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재생산에 관한 국내의 법률과 규정이 헌법과 모자보건법, 아동복지법, 학교보건법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며, 국제적 집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하여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

지표 5.a.2은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소유와 접근을 보장하고자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수’를 측정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법적근거란 여성의 토지소유권 및 통제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포함한다. 따라서 본 지표는 토지 소유권 및 통제권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경제 자산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 내용도 모니터링 한다(UNSD, 2016). 이 정의에 따른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헌법 23조를 통하여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별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 지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자원 접근에 대한 “동등한 권리”는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표 5.c.1은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권한 강화를 위한 견실한(sound)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을 채택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 cycle)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예산 배분 및 지출을 1) 추적하고 2) 공개하는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인지적 예산 배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회람(call-circulars)이나 지시 등의 가이드라인, 부문별 예산의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 할당, 성인지예산서 등이 구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자료구축 면에서 보면 본 지표는 통계의 수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존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법(2011. 9. 15. 제정)과 양성평등기본법 제16조(성인지 예산)에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그룹 I>에 해당하는 지표를 종합해 보면, 기존의 여성관련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명료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지표들로서, 양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법 및 규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SDGs 성평등 지표의 근간이 되는 법, 규정, 정책, 시스템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SDGs 성평등 지표를 이행하고 측정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다.

## 2. 그룹 II : 국내이행을 위한 정의가 확실하나 국내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표

<그룹 II>에는 5.3.1, 5.3.2, 5.6.1, 5.a.1, 5.b.1 총 5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 지표들은 정의가 확실하나 국내이행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표로서 향후 국내이행을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수집 및 통계개발이 필요하다.

지표 5.3.1은 ‘아동결혼, 조혼 및 강제결혼과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harmful practices)을 근절’하기 위하여 유해한 관습의 한 사례로서 언급된 아동결혼 및 조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20-24세의 여성인구 중에서, 15세 이전에 초혼 혹은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과, 18세 이전에 초혼 혹은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의 비율을 검토한다. 성년인 18세 이전의 아동결혼(child marriage)으로 인해 청소년 여아들은 조기임신(early pregnancy)이나 사회적 단절(social isolation)을 경험할 수 있고, 학업 중단, 경력 기회에 대한 제한, 동거인(intimate partner)으로부터의 폭력 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적이며, 보통 이러한 아동결혼의 경우 사회문화적으로 정의되는 여성의 젠더역할(gender roles)과 긴밀히 관계되어 있다(UNSD, 2016). 이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국내에 가용통계의 경우, 통계청 <인구센서스의 혼인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등의 통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실혼이나 동거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며, 특히 15세 이전의 동거 경험 혹은 사실혼 경험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가적 통계 생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b).

지표 5.3.2는 세부목표 상 제시된 유해한 관습의 한 사례로서 제시된 여성성기절제(FGM)에 대한 지표로서 15~49세 사이 여성인구 중에서 여성성기절

제(FGM/C)를 경험한 여성의 비율을 측정한다. 여성성기절제(FGM)는 의료적인 이유가 아니라 전통관습 차원에서 여성 및 여아의 외부생식기의 부분 혹은 전체를 제거하거나 여성의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는 행위로서, 이를 통해 여성의 성욕(sexuality)이 통제되고 결혼 이전의 처녀성(virginity) 및 정절(chastity)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성차별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UN, n.d.). 이러한 여성성기절제는 여성의 건강에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이는 명백한 여아 및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폭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UN, n.d.).

지표인 5.3.2와 관련해 기존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성기절제가 주로 종교나 문화적 관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맞지 않으므로, 국내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즉, 해당지표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이 지표의 국내적용이 어려움에 불구하고, 동 세부 목표 및 지표의 의의와 국내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적 지표를 고려해볼 수 있다. 여성에게 유해한 전통적 관습에 대한 유엔의 접근에 대한 한 연구(Winter et al., 2002)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발전된 서구(West)에서는 여성성기절제와 같은 유해한 관습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에 해로운 남성중심적 문화, 즉, 성차별적인 구조가 여전히 존재하며, 미용기술 역시 이러한 남성중심적 문화 속에서 여성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한 예로 설명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Howard, 1993; Winter et al., 2002에서 재인용). 따라서 지표 5.3.2의 국내이행점검을 위해서는 여성성기절제(FGM/C) 외에도 국내 사회문화적 차별과 성별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에게 부과되는 특정한 행위들을 반영하여 대안적 지표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내적 대안지표로서 온라인상의 여성혐오, 여성청소년들의 신체왜곡현상 등은 소비자분주의라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여성들에 대한 유해한 관습의 한 예로 해석되고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지표 5.3.2는 한국의 맥락을 반영한 대안지표를 설정할지에 대한 국내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K-SDGs 성평등 목표 작업반에서 논의 중에 있다.

지표 5.6.1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 등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15-49세의 여성 비율을 측정한다. 즉, 성관계 및 재생산에 대한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결정에 남성을 비롯하여 여성의 자발적 의사가 얼마나 고려되는지 측정하기 위함이다. UN Women은 본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

임신 등의 의사결정에 대해 여성의 결정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UN Women, 2015). 이 정의에 입각한 국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a).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국내 전국적인 표본을 토대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의 출산 및 결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지표 5.6.1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조사는 5.6.1 지표의 국내이행정도를 충실히 파악하기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성관계 결정권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둘째, 피임기구 사용여부와 성·재생산 보건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것이 여성 스스로의 결정권에 기반을 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 셋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미혼 여성의 성관계와 피임 여부, 성·재생산 보건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SDGs 지표 5.6.1에서 제시하는 여성이 자신의 의사를 토대로 성관계, 피임사용 여부, 출산 등을 포함한 성·재생산 보건 서비스 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사 도구에 신규 질문을 추가로 포함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표 5.a1은 여성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소유와 접근을 보장하고자 1) 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성별 분리)과 2) 총 토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를 측정한다. 첫 번째 내용은 전체 농업 종사자 중에 농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하는 반면, 두 번째 농지에 대한 권리 및 소유권에서 여성이 얼마나 차별 받는지를 나타내며 직접적으로 양성 평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 정의에 따른 국내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토지소유현황에 대해 성별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나, 2018년도부터 국가승인통계인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에 성별구분이 적용될 계획이 있다. 그러나 향후 해당 지표의 취지에 기반하여 국내적 맥락에 적합한 지표의 수립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본 지표를 한국에서 적용할 경우, 단지 농지소유 뿐 아니라 각종 동산 및 부동산 소유 등으로 그 해석을 확대해 볼 수 있다. 이는 동 지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단지 여성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사실 여부가 아니라, 다양한 경제적 자원에의 접근과 소유가 법적, 실질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차별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과 통제가 실현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이슈이다. 또한 한국과 같이 농업의 비중이 적은 편이고, 한국의 산업구조 등 경제·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이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SDGs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표 5.b.1은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핵심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별 휴대폰 보유율을 측정한다. 휴대폰의 보유 여부는 농촌 및 벽지 거주자의 정보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련이 있으며, 휴대폰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여성의 권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동 지표는 매우 중요하다(UN Women, 2015). 이 지표는 개인용도를 위해 최소 1개의 활성화된 SIM 카드와 휴대폰 단말기가 있다면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간주한다(UNSD, 2016). 그러나 국내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휴대전화 보급률에 대한 성별분리 국내 국가승인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7 한국미디어 패널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만 6세 이상 국민의 95%가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1년 이후 개인 휴대폰 보유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신지형 외, 2017). 그러나 이는 성별 분리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에서 개인별 휴대폰 보유현황을 조사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이 조사 역시 성별로 분리되지 않았다(통계개발원·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 2016b).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의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통계가 구축되어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즉, 한국의 높은 휴대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외의 전체 휴대폰 보유에 대한 성별분리 공식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향후에는 국가승인차원의 통계에서 휴대폰 보급 현황을 파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룹 II>의 지표를 종합해 보면 국제적으로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나 국내이행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해 성인지적, 인권적 관점이 부재했거나 혹은 보다 세분화된 관심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성적,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에 대한 성별분리 현황자료는 구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여성이 얼마나 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통계는 부재한 경우 이에 대한 여성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또한 정의가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자료가 부재한 경우, 그 이슈가 국내의 사회적 맥락에 유의미하지 않다고 여겨졌음을 시사한다. 대표적으로 여성성기절제(FGM/C)나 조혼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SDGs에서 추구하는 구조적이고 전환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한 대안지표를 설정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 3. 그룹 III : 국내이행을 위한 정의가 불확실하나 국내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지표

〈그룹 III〉에는 5.5.1의 1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 지표는 정의가 불확실하거나 논의 중에 있지만, 국내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지표를 의미한다. 즉, 이 지표들의 측정을 위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지표 5.5.1의 경우 ‘의회(national parliaments)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여성 의석 비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여성 의석 비율에서 의회비율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지만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의 경우 어느 수준의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의회의 경우 단원제 의회의 의원과 양원제 의회의 하원의원을 포함하며 양원제 의회의 상원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UNSD, 2016). 한편,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경우, 유엔 통계위원회(UNSC)에서 2008년 개정·발간한 「2008년 국가계정시스템」 상의 정의에 따라 “행정적·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세·입법·행정 권한이 미치는 가장 작은 지역의 제도적 단위”로서, 각 국별로 헌법, 선거법, 지방정부법 등에 명시된 법제에 따라 정의되고 있다 (UN Women, 2017).

지표 5.5.1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통계〉를 이용할 수 있다(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2016a). 당선인 통계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로 나누어져 있으며, 역대 선거와 더불어 재·보궐선거에 대한 통계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당선인과 비례대표 당선인 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대한 국제적 정의에 발맞추어 SDGs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한국의 법·제도적 맥락에 적합한 조작적 개념을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다. 즉, 이 경우 한국 맥락에서 각 지역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여 주는 가장 적합한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 4. 그룹 IV : 국내이행을 위한 정의가 불확실하고 국내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표

〈그룹 IV〉에는 5.2.1, 5.2.2, 5.5.2의 총 3개 지표가 포함되었다. 이 지표들은 정의가 불확실하고 통계의 생산도 어려운 경우이다. 이 그룹의 통계는 개념의 확실한 조작적 정의가 선행된 이후에야 관련 통계의 생산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표 5.2.1은 여성과 여아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철폐를 목적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성적 파트너(intimate partner)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의 여아 비율’을 측정하고자 한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공동의 보편적인 문제이다(UN Women, 2015 ; 이선주 외,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MDGs 내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슈가 포함되지 않아 여성의 차별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이슈를 조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김은경 외, 2014). SDGs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반영되어 여성의 차별을 야기하는 구조적인 이슈 중 하나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과 15세 이상의 여아의 두 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여아에 대한 폭력을 유의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표 5.2.1을 정의함에 있어서 성적 파트너(intimate partner)의 경우 영문을 직역하면 ‘친밀한 파트너’로 번역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성적 파트너’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가정 내의 부부뿐만 아니라, 법적 관계로 묶이지 않은 데이트 상대 등의 친밀한 관계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문의 ‘intimate partner’를 조작적으로 정의함에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요구된다. 즉, 국내 맥락에서 ‘intimate partner’를 ‘성적 파트너’로 정의할 것인지, 또한 이를 ‘성적 파트너’로 정의할 때 성적 관계를 수반하지 않은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한 국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지표 5.2.1 정의에 일치하는 국내 통계는 부재한 상황이나, 대치 가능한 통계로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가 있다. 먼저,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의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의 유배우자(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배우자와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을 조사한다. 이 조사에서 가정폭력 실태는 지난 1년 간 유형별 폭력행위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로 조사된다. 두 번째로 대치 가능한 통계

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016년에 발표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이다. 이 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최근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피해 경험의 여부를 조사한다. 그러나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통계의 신뢰성을 갖고 있으나, 동거상태가 아닌 비동거 상태의 성적 파트너에게 당한 폭력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이 만 18세를 이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여아가 경험하는 폭력에 대한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표 5.2.1의 국내 이행과 SDGs 국가 보고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추가적인 통계자료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표 5.2.2의 경우에는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여성 및 15세 이상 여아의 비율을 조사한다. 동 지표는 앞서 논의한 지표 5.2.1과 마찬가지로 ‘성적 파트너(intimate partner)’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표 5.2.2에 관한 국내 가용 가능한 통계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신뢰성을 갖추고 있으나, 신체적 성폭력에 초점을 맞춰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서의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은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의 경우 성범죄피해자의 성별, 연령별 분리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 여성과 15세 이상 여아의 연령별 성범죄 피해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자료를 제시하며, 같은 자료의 ‘범죄피해자의 신체 피해상황’과 ‘범죄피해자’의 성별 통계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여성피해자 수와 강력범죄(폭력)를 경험한 여성의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주재선·송치선·박건표, 2016). 그러나 이 역시 정신적 폭력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SDGs 지표 5.2.2의 국내이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은, 여성과 15세 이상의 여아가 경험하는 다양한 위험성을 드러내는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도움이 된다(UNSD, 2016). 따라서 국내 여성과 여아의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통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지표 5.5.2.는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관리직의 비율을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외 분야로 나누어 측정한다. 이를 정의함에 있어서 ‘여성 관리직’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행정부 여성 관리직과 관련한

여 지방정부 고위직(leadership position)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표 5.5.2에 대한 국내 가용통계는 대체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으나, 일부 자료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하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이 관련 통계를 제시한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서는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여성의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 판사를 포함한 여성 법조인 비율,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제시한다. 사법부 부분의 경우, 전체 판사 중 여성 판사의 비율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며, 경찰관의 경우 <경찰통계연보>를 통해 전체 경찰관 중 여성 경찰관 관리직에 대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 부분의 경우에도 국가 원수, 정부 대표 여성의 비율과 여성 장관직 비율에 대한 통계는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룹 IV>의 지표의 경우 지표의 정의가 불확실하여 이에 따른 통계의 생산도 어려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국내이행을 위한 점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표에 대한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국내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보인다. 따라서 <그룹 IV>의 국내이행방안 점검을 위해서는 지표에 대한 개념적 논의와 함께 통계 생산방안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5. 분석 결과와 국제 지표 분류와의 비교

앞서 살펴본 SDG 5번 성평등 목표 내 지표의 국제지표 상 Tier 분류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한 정의의 확실여부와 해당 통계자료의 유무에 따른 국내적 지표현황 점검 결과를 <표 5>와 같이 비교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적 지표 논의와 국내적 지표 수립을 위한 노력을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일부 지표들은 국제사회의 지표 관련 논의가 국내 지표 현황에 비해 더 나은 상태로, 국제사회의 논의를 국내적으로 내재화하고 따라감으로써 국내 지표현황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2.1, 5.2.2, 5.5.2, 5.b.1 지표의 경우, 국제적으로 그 개념이 명확화되고 구체적으로 수립된 방법론과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지표의 정의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이들 지표들의 경우, 국제적 논의를 국내적으로 내재화하여 그 정의를 명확화하는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일부 지표들은 국제사회의 지표수립 관련 노력과 함께 가야 할 공동의 향후과제를 가진 지표들로 구분할 수 있다. 5.3.1, 5.3.2, 5.6.1, 5.a.1 지표들의 경우, 국제 Tier 구분이 Tier II로, 국제적으로 정립된 개념과 방법론/기준이 존재하지만, 통계생산이 부족한 지표들인데, 국내적으로도 지표의 정의가 확실한 반면, 관련 통계가 존재하고 있지 못하다는 국내·외 공통의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지표들은 향후 국제사회의 지표개선 과정과 국내지표 개선과정이 연동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히려 국내지표가 잘 구축되어 있어 국제적 지표 개발 및 개선 논의에 우리나라가 기여할 만한 지표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5.1.1, 5.4.1, 5.6.2, 5.a.2, 5.c.1 지표들의 경우, 국제적으로 그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거나 데이터가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그 정의가 비교적 명확하고 적합한 통계 역시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성평등 지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표들이다.

〈표 5〉 국제지표 Tier와의 비교

지표	국내 지표 분류	국제 지표 분류
5.1.1 양성평등과 비차별을 증진하고 집행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존재여부	그룹 I	Tier III
5.2.1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여아 중 현재 또는 이전의 성적 파트너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그룹 IV	Tier II
5.2.2 지난 12개월 동안 파트너가 있었던 여성 및 15세 이상 여아 중 성적 파트너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육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	그룹 IV	Tier II
5.3.1 20~24세 여성 중 15세 이전과 18세 이전에 결혼(married) 또는 동거(in a union)를 했던 여성의 비율	그룹 II	Tier II
5.3.2 15~49세 여아 및 여성 중 여성성기절제(FGM/C)를 경험한 연령별 비율	그룹 II	Tier II
5.4.1 무보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성별, 연령별, 장소별 비율	그룹 I	Tier II
5.5.1 의회와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	그룹 III	Tier I (a)/ Tier II (b)
5.5.2 여성 관리직 비율	그룹 IV	Tier I

지표		국내 지표 분류	국제 지표 분류
5.6.1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성적 관계, 피임도구 사용, 재생산 건강 관리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15~49세의 여성 비율	그룹 II	Tier II
5.6.2	성·재생산에 관한 보건, 정보, 교육에 대한 15세 이상의 여성 및 남성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및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국가의 수	그룹 I	Tier III
5.a.1	(a)농지에 대한 소유 및 소유권을 보장받는 전체 농업인구 비율 (성별 분리): (b) 총 토지소유자 중 여성 토지소유자(토지권 종류별)	그룹 II	Tier II
5.a.2	(관습법을 포함한) 법적근거를 통해 여성의 토지소유 또는 통제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수	그룹 I	Tier II
5.b.1	성별 휴대폰 보유율	그룹 II	Tier I
5.c.1	양성평등 및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공공자원 배분 및 추적시스템을 갖춘 국가의 비율	그룹 I	Tier II

출처 : IAEG-SDGs (2017b)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SDGs 성평등 지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SDG 5 성평등 목표 내 지표의 정의의 정확성과 국내 통계 가용 정도를 두 축으로 설정하여 4가지 범주로 지표의 범주화를 시도함으로써 SDG 5 국내이행을 위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의가 확실하고 국내이행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지표로 구성된 <그룹 I>과 정의가 확실하나 국내이행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표로 구성된 <그룹 II>의 경우 각각 5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정의가 불확실하나 국내이행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지표로 구성된 <그룹 III>의 경우 1개의 지표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정의가 불확실하고 국내이행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표로 구성된 <그룹 IV>에는 3개의 지표가 분류되었다. 종합해 볼 때 총 14개의 지표 중 대부분의 지표인 10개는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나, 4개의 지표는 국내이행을 점검하기에 앞서 해당 지표 정의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자료구축 측면에서 살펴보면, 총 14개의 지표 중 6개 지표의 경우 자료가 잘 구축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8개의 지표의 경우에는 자료가 부분적으로 구축되어 있거나 부재하여 이에 대한 추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범주별로 SDG 성평등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룹 I〉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국내이행을 위한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지표의 통계생산과 모니터링을 정기화할 필요가 있으며, 잘 구축되어 있는 국내지표들에 대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룹 I〉에 해당하는 지표는 수치화할 수 있는 지표와 함께 양성평등을 증진할 수 있는 법 및 규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가 다수를 차지한다. 즉, 한국의 경우 SDGs 성평등 지표의 근간이 되는 법, 규정, 정책, 시스템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SDGs 성평등 지표를 이행하고 측정하는데 중요한 근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을 포함하여 〈그룹 I〉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험이 국제사회의 성평등 지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그 논의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정의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나 국내이행을 위한 자료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은 〈그룹 II〉의 지표의 경우, 국내 통계를 새롭게 생산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예를 들어 성적, 성관계, 피임도구 사용에 대한 성별분리 현황자료는 구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여성이 얼마나 결정권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한 통계는 부재한 경우 이에 대한 여성의 의사결정권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조사되고 있는 통계에 관련 조사문항을 추가하거나, 성별 분리된 표본 설계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그룹 II〉의 대부분의 지표가 국제적으로도 Tier II에 속하기 때문에, 국내·외적인 공통의 도전과제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지표들은 향후 국제사회의 지표 개선 과정과 국내지표 개선과정이 연동되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룹 III〉 정의가 불확실하거나 논의 중에 있지만, 국내자료가 구축되어 있는 지표를 의미하는 독특한 경우로, 이에 관해서는 국내 관련 가용통계를 바탕으로 해당 지표의 조작적 정의의 정립을 위해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논의에 참여하고 기여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에 서술하였듯이, 〈그룹 III〉에 포함된 지표 5.5.1의 경우 ‘의회(national parliaments)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여성 의석 비율’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여성 의석 비율에서 의회비율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지만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의 경우 어느 수준의 지방정부의 여성 의석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즉, 이 지표들의 측정을 위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합의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다 능동적으로는, 한국 맥락에서 각

지역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여 주는 가장 적합한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룹 IV>의 지표의 경우 지표의 정의가 불확실하여 이에 따른 통계의 생산도 어려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국내이행을 위한 점검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표에 대한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국내적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통계 자료를 생산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보인다. 특히, <그룹 IV>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국제적으로는 의미적 합의가 도출된 지표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비해 국내 맥락에서의 개념적 합의와 통계생산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룹 IV>의 국내이행방안 점검을 위해서는 국제적 논의를 국내적으로 내재화하여 그 정의를 명확화 하여, 해당 통계생산에 대한 논의 작업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SDG 성평등 목표의 국내이행을 위한 각 세부목표와 지표의 해석, 지표 확정, 대안지표 개발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현재 K-SDGs 수립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본 연구는 SDG 성평등 목표에 대한 이해와 국내현황을 파악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SDG 성평등 목표 이행을 위한 개념적, 통계적 현황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대안지표에 발굴과 충분한 고민을 포함하지 못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SDG 5.3.2의 유해한 관습 근절에 포함된 조혼이나 여성성기절제(FGM/C)의 비율의 경우,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여길 수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내 존재하는 유해한 관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대안지표를 제안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SDG 5의 독자 목표만을 다루었지만, SDGs 내 성평등 범분야(cross-cutting) 목표의 지표를 분석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SDGs와 관련한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성평등 목표 외에 범분야(cross-cutting)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여 그 이외에도 SDGs의 전 지표의 성인지적인 해석과, 성별 분리 가능 통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지향하는 바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no one left behind)의 정신에 따라 데이터를 성, 연령별 등 세분화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비단 성평등 목표와 범분야(cross-cutting) 지표들뿐만 아니라, SDGs의 모든 목표에 대해 성별분리 필요성이 있는 지표들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아울러 기존 성평등 관련 국제기구의 다양한

지표체계를 소개, 비교하는 작업, 글로벌 지표 중 국가 비교가 가능한 지표에 대해 국가별 비교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위치를 보여 주는 작업 등도 수행된다면,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풍성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는 글로벌 논의 현황과 해외 사례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벌 지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다. 예를 들어 SDG 2번 기아와 관련된 세부목표 내 여성과 여아의 빈혈자수를 지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최근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임신부의 재생산 건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성평등 목표 달성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국내이행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실무 작업반 포털을 구축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SDGs 목표별 주요 이해관계자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국민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국 정부가 이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해외 사례의 벤치마킹 또한 요구된다. 특히 독자 목표이면서 범분야(cross-cutting) 목표의 이행을 위한 선진국 및 개도국 정부들의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매핑(mapping) 작업은 향후 국내이행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강상인(2015).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KEI 포커스, 3(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고경환·장영식·임달오·최영준·고금지·김솔휘(2016). UN SDGs 보건·복지분야 지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 고재경·주정현(201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관계부처합동(2016).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관계부처합동
- 김수진(2016). SDGs 지표의 데이터 이용가능성 분석, 국제개발협력. 2016(2) : 79-113.
- 김양희.(2014). 젠더 측면에서 본 MDGs 의 한계와 Post-MDGs 논의 동향. 국제개발협력, 2014(3), 146-176.
- 김은경·장은하·이미정·김영택·곽서희·조영숙(2014). Post-2015 개발체제에서 젠더의제 분석.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지현(2015). Post-2015 개발의제 동향연구 1 : SDGs 초안 분석. 개발과 이슈, 19, 1-35.
- 김지현(2016).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의 SDGs 이행과정 검토. 개발과 이슈, 26, 1-16.
- 박영실·이영미·김석호·차은지(201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표 프레임워크 구축과 통계의 역할. 조사연구, 18(3). 77-96.
- 오수길·윤경효·김시내·람후 몽크라능·운드라흐바야르 출몽(2016). 한국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활동 현황 보고서 2011-2015.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이수형(2016).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분석과 이행 전략 :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42(0), 96-114.
- 이선주·변화순·박성정(2010). 북경행동강령 이행 15주년 점검 및 향후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금나(2015). “Goal 5 : 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여아의 역량강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 수립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국제협력단.
- 장은하·문유경·조혜승·김정수·김지현(201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내 성평등 관련 지표의 국내이행 현황 및 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신지형·김윤화·오윤석(2017). 2017 한국미디어 패널 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진재현(2017).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데이터 세분화 방향,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44(0), 99-109.

- 조을생·노태호·강택구·김선아·박준현·박준희(2014).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부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용역 보고서.
-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6). 2016 한국의 성인지 통계.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2016a).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 I. 해설편,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 \_\_\_\_\_ (2016b).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 II. 글로벌 지표편, 통계개발원·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
-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2016). 유엔 SDGs 국가 평가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초안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 입장(2016/7. 1.). URL : <http://www.odawatch.net/470563> (접속일 : 2017. 12. 15.)
-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최종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isis.kisa.or.kr/board/?pageId=060100&bbsId=7&itemId=817&searchKey=&searchTxt=&pageIndex=1> (접속일 2017. 12. 18)
-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8).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작업반 착수설명회 자료집.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Amnesty International(2012). *Realizing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A Human Rights Framework*. London : Amnesty International.
- Barton, C.(2005). Where to for Women's Movements and the MDGs?, *Gender and Development*, 13(1). 25-35.
- CEDAW(1979).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http://www.un.org/womenwatch/daw/cedaw/> (접속일 : 2018. 1. 31.)
- Howard, R.(1993). Health Costs of Social Degradation and Female Self-Mutilation in North America, in Kathleen Mahoney and Paul Mahoney (eds) *Human Righ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Dordrecht, Boston, MA Et London : Martinus Nijhoff.
- ICPD(1994). Program of Ac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event-pdf/PoA\\_en.pdf](https://www.unfpa.org/sites/default/files/event-pdf/PoA_en.pdf) (접속일 : 2018. 1. 31.)

- IAEG-SDGs(2017a). *Agenda Items 5 at the 5th Meeting of IAEG-SDGs*,  
<https://unstats.un.org/sdgs/meetings/iaeg-sdgs-meeting-05> (접속일 :  
2017.11.10.)
- \_\_\_\_\_ (2017b). *Tier Classification for Global SDG Indicator 15  
December 2017*  
<https://unstats.un.org/sdgs/iaeg-sdgs/tier-classification/> (접속일 :  
2018. 1. 4.)
- UN. (n.d.).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Fact Sheet No. 23).  
[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23en.p  
df](http://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23en.pdf) (접속일 : 2017. 10. 05.)
- UNSD(2016).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IAEG-SDGs, Metadata compilation*.  
[https://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  
-Goal-5.pdf](https://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5.pdf) (접속일 : 2017.8.10.)
- UN Women(2013). *A Transformative Stand-alone Goals on Achieving  
Gender Equality, Women's Rights and Women's Empowerment  
: Imperatives and Key Components*, New York : UN Women.  
<http://www.unwomen.org/> (접속일 : 2017.11.10.)
- \_\_\_\_\_ (2015). *Position Paper : Monitoring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in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New  
York : UN Women
- \_\_\_\_\_ (2017). Methodological Note on SDG Indicator 5.5.1b  
"Proportion of seats held by women in local governments". Sixth  
meeting of the IAEG-SDGs : Tier re-classification request documents.  
<https://unstats.un.org/sdgs/meetings/iaeg-sdgs-meeting-06/> (접속일 :  
2018. 4. 30.)
- Winter, B., Thompson, D. & Jeffreys, S.(2002) The UN Approach to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International Feminist Journal of  
Politics*, 4:1, 72-94. DOI : 10.1080/14616740110116191.

Abstract

## A Basic Study on the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5 in South Korea

Eun Ha Chang\*·You Kyung Moon\*\*·  
Hye Seung Cho\*\*\*·Jung Soo Kim\*\*\*\*·  
Ji Hyun Kim\*\*\*\*\*

This research explores the status and future tasks of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5 in South Korea by especially focusing on indicators. Among its 17 goals and 169 targets, SDGs sets forth gender equality and empowerment of women and girls as a stand-alone goal 5, and gender issues are also cross cut in other goals as well. The independent as well as cross cutting nature of gender related issues imply the quintessential nature of gender in attaining the overall SDG targets. In particular, SDG goal 5, unlik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pursues transformative changes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with a number of indicators urging structural changes. Give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and the availability of national data corresponding to SDG 5's global indicator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establishment of SDG 5 indicators for national implementation. As a theoretical background, we first outline the process of setting up the indicators of SDGs with particular focus of Goal 5, and then we introduce the governance system for SDGs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and analyze the existing literature for this study. For methods, this study employs document reviews. We created an analytical matrix, using two pillars; indicators' definitions and availability of national data. Based on this matrix, this research categories each indicators into four groups. As

---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Senior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Senior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Research Fellow,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results, this study reveals that several indicators require operational definition for domestic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gender-sensitive domestic data for future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In conclusion, we present practical implications for future implementation of SDG goal 5 and its indicators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research for establishing national indicators for the implementation of gender-related SDG targets in South Korea, and ultimately to achieve the goal of gender equity in SDGs.

**Keyword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ender equality,  
women